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114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	---

1.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영세율 추징사유 확대(엄태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영진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서천호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서삼석의원안, 김선교의원안, 이병진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유상범의원안, 임호선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서영교의원안(12789, 12819), 정희용의원안, 정부안) 2
2.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이병진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 14
3.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이병진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22
4.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이병진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30

I. 개요

1.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11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병진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6. 27.

(3) 회 부 일 : 2025. 6.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수산 분야,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등 도서지역 지원 부문 및 연안화물선 경유에 대한 면세 등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어민 지원 및 해양수산 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 분야, 도서지역 지원 부문 및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제1항,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 제104조의30제1항,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1항, 제106조의2제1항, 제111조제1항 및 제111조의5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영세율 추징사유 확대(엄태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영진의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서천호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서삼석의원안, 김선교의원안, 이병진의의원안, 송옥주의의원안, 신영대의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유상범의원안, 임호선의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서영교의원안(12789, 12819), 정희용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제105조제1항) ○ 영세율 적용대상 -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제5호) -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제6호) ○ 적용기한 - 제5호: <u>2025년 12월 31일</u> - 제6호: <u>2025년 12월 31일</u>	□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연장 - 제5호 · <u>2027년 12월 31일(서영교의원안)</u> · <u>2028년 12월 31일(엄태영·김영진·이원택·이병진·송옥주·신영대·추경호·최은석·윤영석의원안, 정부안)</u> · <u>2029년 12월 31일(이만희·김선교의원안)</u> · <u>2030년 12월 31일(윤준병·서천호·서삼석·유상범·임호선·정희용의원안)</u> · <u>2035년 12월 31일(문대림의원안)</u> - 제6호 · <u>2027년 12월 31일(서영교의원안)</u> · <u>2028년 12월 31일(엄태영·김영진·이병진·송옥주·신영대·추경호·최은석·윤영석의원안, 정부안)</u> · <u>2029년 12월 31일(김선교의원안)</u>

현 행	개 정 안
	· 2030년 12월 31일(윤준병·서천호·서삼석·유상범·임호선·정희용의원안)
☐ 농어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추징(제105조제2항) ○ 적용대상 - <u>농민이 아닌 자가 축산업용 기자재 등을 부정하게 공급받는 경우</u> ○ 추징액 -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농어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적용시 추징사유 확대 ○ 적용대상 - <u>농민·임업인이 아닌 자가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등을 공급받는 경우</u> - <u>어민이 아닌 자가 어업용 기자재 등을 공급받는 경우(정부안)</u> ○ 추징액 - 그 <u>기자재등의</u>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수입에 대한 면제(제106조제2항) ○ 면제 적용대상 -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제9호) ○ 적용기한 - <u>2025년 12월 31일</u>	☐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수입에 대한 면제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연장 - <u>2027년 12월 31일(서영교의원안)</u> - <u>2028년 12월 31일(이병진·추경호·최은석·윤영석의원안, 정부안)</u> - <u>2030년 12월 31일(윤준병·서천호·유상범·임호선의원안)</u> ☐ 부 칙 ○ 시행일 - 공포한 날(윤준병·김선교·신영대의원안) - 2026년 1월 1일(엄태영·김영진·문대림·이원택·서천호·이만희·서삼석·이병진·송옥주·추경호·최은석·유상범·임호선·윤영석·서영교·정희용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적용례: 가산세 추징(제105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정부안)

* 임태영의원안 2025. 3. 4. 발의(의안번호 8635),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6), 김영진의원안 2025. 3. 11. 발의(의안번호 8790), 문대림의원안 2025. 3. 13. 발의(의안번호 8912), 이원택의원안 2025. 3. 18. 발의(의안번호 9018), 서천호의원안 2025. 3. 18. 발의(의안번호 9021), 이만희의원안 2025. 3. 19. 발의(의안번호 9105), 서삼석의원안 2025. 3. 21. 발의(의안번호 9223), 김선교의원안 2025. 3. 25. 발의(의안번호 9340), 이병진의원안 2025. 6. 27. 발의(의안번호 11114), 송옥주의원안 2025. 7. 28. 발의(의안번호 11783), 신영대의원안 2025. 7. 31. 발의(의안번호 11884), 추경호의원안 2025. 8. 6. 발의(의안번호 12018), 최은석의원안 2025. 8. 11. 발의(의안번호 12093), 유상범의원안 2025. 8. 13. 발의(의안번호 12154), 임호선의원안 2025. 9. 2. 발의(의안번호 12620), 윤영석의원안 2025. 9. 3. 발의(의안번호 12676), 서영교의원안 2025. 9. 8. 발의(의안번호 12789), 서영교의원안 2025. 9. 9. 발의(의안번호 12819), 정희용의원안 2025. 9. 23. 발의(의안번호 13179),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가.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적용기한 연장

- 개정안은 2025년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이하 “농어업용 기자재 등”이라 함)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수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동 특례제도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제를 적용함으로써 영농비용 절감을 통해 농어업의 가격경쟁력 강화와 농어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개정안은 농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할 때, 농어민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동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취지임.

- 현재 농어업용 기자재 등¹⁾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완화하고 국내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동 제도에 따른 2026년 감면세액은 2조 2,602억원으로 전망됨.

1) 비료, 농약, 사료, 기계 등 농·축산·임업용 기자재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비료, 농약, 경운기·트랙터·콤바인 등 농업기계, 양돈케이지·사료저장탱크 등 축산기계, 약제주입기 등 임업용 기자재, 어망·선박용 기관 등 어업용 기자재, 목초액 등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 등임.

또한, 농어업용 기자재 등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동 제도는 1997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2026년 감면 세액은 20억원으로 전망됨.

[농어업용 기자재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제도의 조세감면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전망)	2026(전망)
영 세 율	18,481	21,886	23,047	22,266	21,916	22,602
수입면세	34	46	24	23	19	20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한편,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전체 기자재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최근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비율은 2023년의 경우 96.4%, 어업용 기자재 분의 비율은 3.3% 수준으로 집계됨.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농어업용 기자재 등 공급가액 항목별 비율]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농·축산·임업용 (제105조제1항제5호)	95.8	95.8	96.0	95.8	96.4
어업용 (제105조제1항제6호)	4.2	4.0	4.2	3.6	3.3

주: 공급가액은 신고(귀속) 기준 금액이며, 최종적인 영세율 적용 대상 금액과는 차이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농·어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60~80% 수준으로 여

전히 낮은 편이므로, 농어민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여 도·농간 소득격차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측면이 있음.

[농가·어가 가구당 소득 현황]

연 도	농 가		어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C)
	농가소득(A)	비율(A/C)	어가소득(B)	비율(B/C)	
2015년	37,215	64.4	43,895	75.9	57,800
2016년	37,197	63.5	47,077	80.3	58,613
2017년	38,239	63.7	49,016	81.7	60,031
2018년	42,066	64.9	51,836	80.0	64,822
2019년	41,182	61.8	48,415	72.6	66,660
2020년	45,029	62.2	53,187	73.5	72,363
2021년	47,759	65.7	52,392	72.1	72,688
2022년	46,153	63.6	52,911	72.9	72,548
2023년	50,828	67.5	54,779	72.7	75,344
2024년	50,597	66.8	63,652	84.1	75,727

(단위: 천원, %)

주: 농가·어가소득은 농업·어업소득 및 비농업·비어업소득을 합한 농가·어가의 총소득을 말하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실질소득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농가·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둘째, 농어업 부문의 인력부족 현상²⁾을 보완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기계화가 촉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어민이 기자재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2)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우리나라 농가는 97만 4천 가구, 어가는 4만 1천 가구(내수면 제외), 임가는 9만 8천 가구로 전년 대비 농가(-2.5%), 어가(-2.1%), 임가(-1.2%) 모두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농가 55.8%, 어가 50.9%, 임가 56.4%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 농어업용 기자재 등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제도 외에도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재정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

조세정책으로는 「소득세법」에 따른 작물재배업소득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등(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제70조·제87조의2·제88조의5),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제106조의2)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³⁾

[농·축산·임·어업 분야 주요 국세감면제도]

근거		내용
「소득세법」 제12조		· 작물재배업소득 비과세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87조의2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8조의5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105조의2	·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
	제106조의2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3)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농업·축산업·임업·어업 부문에 대한 조세 지원제도는 개략적으로 32개의 제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재정정책으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농어업인의 복지, 보건의료, 교육여건 등을 개선하고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 보전 및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둘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타당성과 효과성이 확보되나 기자재 사용량 확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비료와 사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문제 발생이라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또한, 기본적으로 기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대규모 농어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반면, 소규모·영세 농어민은 기자재 사용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혜택이 작아 대규모 농어민과 소규모 농어민 간의 세제 혜택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음.

- 한편,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안은 2년에서 10년의 기간을 제안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경우 세수는 2026년 2조 6,933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14조 9,888억원(연평균 2조 9,97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또한, 농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경우 세수는 2026년 32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158억원(연평균 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영세율	-26,933	-28,374	-29,894	-31,498	-33,190	-149,888	-29,978
수입면세	-36	-21	-34	-46	-24	-29	-3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농어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적용시 추징사유 확대

□ 개정안은 기존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 추징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농민⁴⁾이 아닌 자가 축산업용 기자재 등을 부정하게 공급받는 경우에 한정되던 것을, 농민·임업인 또는 어민이 아닌 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을 공급받는 경우까지 포함하려는 것임.

이는 현행법 제105조의2⁵⁾에서 농어민이 아닌 자가 모든 기자재에 대해 부당하게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추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영세율 적용에 있어서는 축산업용 기자재 등에 한정해 추징하고 있어, 제도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임.⁶⁾

4)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에 따르면, 축산업 주업법인, 축산계열화 사업자, 비영리 가축검정기관 등도 농민의 범위에 포함됨.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당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1. 농어민등이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농어민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 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 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 라.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해당 농어민등이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 마.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3. 농어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6)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와 영세율 제도의 효율성을 검토한 결과, 환급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등을 감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영세율 제도에 비해 비효율적이지만 농림어업부문에 대한 지원이 비 농림어업부문으로 누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또한, 영세율 적용 대상 기자재와 사후환급 대상 기자재를 비교해보면 영세율 적용 대상 기자재는 비료, 농약, 사료, 동력경운기 등 주로 농림어업에만 사용되는 기자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의 전용가능성을 낮게 본 반면, 사후환급 대상 기자재는 농업·임업용 필름, 농업·임업용 파이프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 기자재가 많았기 때문에 부정수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측면도 있음.⁷⁾

그러나, 영세율 기자재의 종류⁸⁾가 다양하고 타용도 전용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기자재 또한 타용도 전용가능성을 명시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추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와 사후환급 제도의 장·단점 비교]

구분	제도의 우열
제도 혜택의 귀착	환급 방식 우위
납세협력비용, 환급대행수수료 등	영세율 방식 우위
세원수출 및 관리	환급 방식 우위
부정수급 방지	환급 방식 우위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p.91

아울러, 농민·임업인 또는 어민이 아닌 자가 기자재를 재판매하거나 타용도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함.(‘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2024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p192)

7) 농민·임업인이 아닌 자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부정사용, 어민이 아닌 자의 어업용 기자재 부정사용 현황은 국세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확인이 곤란함.

8) 2002년 처음 도입 당시 영세율 적용 기자재는 153개였고, 2006년 이후 130개 내외로 유지되었던 기자재는 2017년 유기농어업자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177개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21년 농업용 기자재 범위를 조정하면서 현재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는 175개임.

함으로써,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세제 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선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147

2.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이병진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 ○ 면제대상 - 전기사업자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협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제1호)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연장 - 2028년 12월 31일(이병진의원안, 정부안) - 2030년 12월 31일(윤준병의원안)
☐ 간접세 면제(제111조제1항) ○ 면제대상 - 전기사업자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협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제2호)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연장 - 2027년 12월 31일(서영교의원안) - 2028년 12월 31일(이병진의원안, 정부안) - 2030년 12월 31일(윤준병의원안) ☐ 부 칙 ○ 시행일 -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 2026년 1월 1일(이병진·서영교의원안, 정부안)

*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6), 이병진의원안 2025. 6. 27. 발의(의안번호 11114), 서영교의원안 2025. 9. 5. 발의(의안번호 12732),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개정안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도서지방의 자가발전 비용을 경감하고 도서지방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여건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동 특례제도는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가 처음 도입된 1977년에 마련된 것으로, 규정이 처음 신설될 당시에는 적용기한이 따로 없었으나 1998년 말 (구)「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2003년 말까지 처음 적용기한을 설정하였고, 이후 기한이 계속 연장되어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 최근 도서지방 자가발전에 사용된 석유량과 조세감면액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3,132kl, 2023년에는 3,695kl, 2024년에는 3,794kl의 석유류가 자가발전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그에 따른 조세감면액은 각각 15억 4,000만원, 17억 3,700만원, 18억 6,400만원임.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감면액 현황]

(단위 : kl, 백만원)

연도별	유종	공급물량	조세감면액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계
2022년	경유	3,130	745	112	194	488	1,539
	휘발유	2	0.6	0.1	0.2	0.3	1.2
	계	3,132	746	112	194	488	1,540
2023년	경유	3,692	879	132	228	495	1,734
	휘발유	3	1.2	0.2	0.3	0.4	2.1
	계	3,695	880	132	229	496	1,737
2024년	경유	3,791	970	146	252	494	1,862
	휘발유	3	1.1	0.2	0.3	0.1	1.9
	계	3,794	971	146	253	494	1,864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자가발전시설이 설치된 면세유 공급대상 도서지방은 2024년 기준 총 31개 지역임.

[2024년도 지역별 도서지방 자가발전시설 공급 현황]

지역	자가발전 도서지역 수	자가발전 도서지역명
경남	5	지심도, 와도, 국도, 수도, 소매물도
인천	3	지도, 굴업도, 백아도
전남	18	하태도, 장도, 만재도, 상태도, 우이도, 금죽도, 각이도, 소각시도, 안마도, 모항도, 소늬도, 대늬도, 맹골도, 서거차도, 외병도, 광대도, 가사도, 삼마도
전북	2	관리도, 방축도
제주	2	추포도, 횡간도
충남	1	죽도
계	31	

자료: 수협중앙회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육지에 비해 전기의 공급이 어려운 도서지방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도서지방의 생활 여건은 육지와 비교했을 때 여러 측면에서 열악하며, 특히 전기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가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서지방 거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면세유 제도와 같은 조세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둘째, 현재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시설 설치·운영비용 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⁹⁾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석유류에 대한

9)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공사비의 재원 등) 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전기를 공급하려는 지역의 배전시설

면세가 중단될 경우 세수는 증가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연료비 부담 증가로 인해 자가발전시설 운영자의 추가 지원 요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도서지방의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국가의 추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면세유 제도의 중단이 재정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제도 외에도 도서지방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재정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

조세정책으로는 「소득세법」에 따른 작물재배업소득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등(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제70조·제87조의2·제88조의5),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제106조의2)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改替工事)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농·축산·임·어업 분야 주요 국세감면제도]

근거		내용
「소득세법」 제12조		· 작물재배업소득 비과세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87조의2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8조의5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105조의2	·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
	제106조의2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재정정책으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농어업인의 복지, 보건의료, 교육여건 등을 개선하고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 보전 및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둘째, 면세유 혜택이 도서지역의 자가발전 시설 운영자들에게 집중됨으로써, 같은 지역 내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할 우려가 있음.

전력망이 연결된 일부 도서지역 주민들은 이미 일반 전력 요금을 지불하고 있어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자가발전 시설을

운영하는 주민들은 면세유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전기요금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발전 사업자들은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어 자가발전 운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음.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17억원 등 2026~2030년까지 5년간 총 85억원(연평균 1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부가가치세	-5	-5	-5	-5	-5	-25	-5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11	-11	-11	-11	-11	-55	-11
교육세	-1	-1	-1	-1	-1	-5	-1
합계	-17	-17	-17	-17	-17	-85	-1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한편,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안은 각각 2년에서 5년의 기간을 제안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7

□ 자가발전 석유류 공급주체

- 회원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수협중앙회에서 공급 받은 석유류를 도서지역에 직접 공급

□ 자가발전 주체

-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주체이며, 면세유 공급대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자가발전 석유류 관련 수협의 역할

- 중 앙 회 : 회원조합으로부터 자가발전 석유류 공급신청 접수
해양수산부에 공급물량 신청, 회원조합에 면세유류 배정
- 회원조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가발전 석유류 공급신청 접수
관할 도서지역의 자가발전 시설에 면세유 직접 공급

□ 자가발전된 전기를 누구에게 공급하는지

- 도서지방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전기를 공급

순서	업무 내용	세부 업무 절차	비 고
①	공급요청	지자체는 관할 도서의 자가발전 시설에 대해 수협(회원조합)에 면세유 공급요청	
②	유류카드 발급	수협은 공급 검토 후, 자가발전시설에 대해 유류카드를 발급	
③	면세유 공급	수협은 지자체의 면세유 신청에 따라 연간 소요량 이내에서 출고지시서를 발급 지자체는 출고지시서를 근거로 수협급유소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음	
④	대금정산	수협은 면세유 공급증서를 근거로 지자체에 면세유 공급 대금 신청 및 정산	

3.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윤준병의원안, 이병진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제106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 면제대상 -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제2호)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7년 12월 31일(서영교의원안) - 2028년 12월 31일(이병진의원안, 정부안) - 2030년 12월 31일(윤준병의원안) ☐ 부 칙 ○ 시행일 -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 2026년 1월 1일(이병진·서영교의원안, 정부안)

*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6), 이병진의원안 2025. 6. 27. 발의(의안번호 11114), 서영교의원안 2025. 9. 5. 발의(의안번호 12732),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개정안은 여객선, 도선 등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¹⁰⁾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¹¹⁾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

10) 「해운법」

제3조(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常時)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1) 조합원(여객운송사업자 등)이 해운조합에 면세유 공급을 주문하면 해운조합이 정유사와 용역업체를 통해

치세 등 간접세 면제¹²⁾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동 특례제도의 목적은 도서지방 거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연안항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운항원가 상승을 억제하여 연안 여객운송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연안여객 운임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도서지방 거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데 있음.

유인섬 현황 조사가 시작된 2015년에는 유인섬이 472개로 조사되었고, 이후 2020년까지 유인섬의 수는 464개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부터 유인섬의 수는 다시 467개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연안의 유인섬은 473개¹³⁾, 무인도서는 2,918개로 조사됨.

한편, 유인섬에 거주하는 인구는 2016년에 86만 3,177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23년에는 81만 4,536명으로 집계되었음.¹⁴⁾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는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¹⁵⁾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조합원에게 이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13) 473개 유인섬 중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의 수는 372개로 전체 유인섬의 78.6%를 차지함.

14) 「2024년 유인섬 현황조사로 본 우리나라 유인섬의 현황」, 김재호, 2024

동 특례제도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석유류세 면제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1975년부터 시행되었고, 그 후 면제되는 세목이 특별소비세(현행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교통세(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현행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확대되었으며,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된 이후 제도의 적용기한이 계속 연장됨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다.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지출 감면액은 2023년 381억원, 2024년 392억원이고, 2025년에는 397억원, 2026년에는 406억원으로 전망되며 부가가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감면 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세 목	2022	2023	2024	2025(전망)	2026(전망)
부가가치세	190	150	143	132	136
개별소비세	9	9	8	7	7
교통·에너지·환경세	224	192	209	223	228
교육세	35	30	32	35	35
소 계	458	381	392	397	406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한편,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의 유종별 공급량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경유는 8만 2,000kl, 중유는 4만 6,000kl로 나타났다.

15)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며, 면제규모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임(「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공급량 실적]

(단위 : 천kl, %)

유종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경유	76	81	86	81	82	2.0
중유	50	55	55	54	46	-1.9

자료: 해양수산부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연안여객선은 도서지역 이동을 위한 유일한 교통수단인바, 동 제도는 연안여객선의 운임 인상을 억제하고 연안여객선 업체의 비용 부담을 경감¹⁶⁾하여 해상교통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¹⁷⁾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연안여객항로는 2024년 말 기준 총 101개 항로로 74개 일반항로와 27개 보조항로¹⁸⁾가 있으며, 129척의 일반항로 연안여객선과 27척의 보조항로 연안여객선이 운항 중에 있음.

16)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연안여객선의 비용 중 유류비가 약 25%를 차지하고 있고, 유류비가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또한 유류비 지급은 유류 공급업체에게 즉시 이루어지다 보니 유가 상승 시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는 등 경영악화가 발생하고 있음.(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안여객 운임 제도 조사 보고서, 2023)

17)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는 연안여객선 면세유 제도 부재시 대다수 연안여객선 사업자가 손실을 기록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보편적 지원이 가능한 조세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은 적절하고, 매출원가나 운임 매출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므로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으로 운항원가 절감효과를 클 것으로 평가함.

18) 섬주민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사업 채산성이 낮은 취항 기피 항로에 대하여 국가가 운항결손액을 보조하는 항로이며, 보조항로사업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되며 선정업체는 3년 동안 계약함.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5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을 통해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의 경우 섬에서 출발하거나 추가 운항하는 항로의 결손금에 대하여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하는 등 적자항로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할 계획임.

[우리나라 연안여객 항로 개요]

(단위: 개)

구분	항로수			척수			업체수
	계	일반항로	보조항로	계	일반항로	보조항로	
계	101	74	27	156	129	27	66

자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둘째, 정부는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이 여객선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낙도 보조항로로 지정¹⁹⁾하여 운항결손액을 보조하고 있는데, 면세유 혜택이 중단될 경우 그만큼 운임 및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이 증가하여 세수 증대의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 있음.²⁰⁾

[보조항로 지정 현황]

구분	항로	선사명	선박명	기항지
1일 생활권 항로	백령-인천	고려고속 훼리(주)	코리아 프린세스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
	장봉-삼목	세종 해운(주)	세종9	신도, 장봉도
	여수-거문	그린 윈드쉽핑	웨스트그린	거문도, 초도, 손죽도, 나로도
	가거-목포	(주)남해고속	뉴퀸	가거도, 만재도

19) 「해운법」

제15조(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 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한다)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 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여객선 이용자 등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은 연안여객선 면세유 제도 적용을 받음에도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를 특정하여 추가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어, 연안여객선 면세유 제도와 보완적인 성격이 강하고 운항결손액 산정 시 유류비도 비용으로 포함하나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안여객선 면세유 제도와 중복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음.

구분	항로	선사명	선박명	기항지
연속 적자 항로	대부-이작	(유)대부 해운	대부고속 페리3	승봉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인천-덕적	고려고속 훼리(주)	코리아익스프 레스카훼리	덕적도
	여수-함구미	(주)신아해운	한려페리9	제도, 개도, 자봉, 송고, 함구미
	통영-용초	한산농협	한산농협 카페리2	한산도, 용초, 호두, 죽도, 좌도, 비산, 화도
	통영-당금	(주)한솔해운	한솔2, 한솔3	한산도, 비진내항, 비진외항. 소매물도, 대항, 당금
	통영-욕지	(주)대일해운	가자바다로, 욕지호	연화도, 우도, 욕지도
	흑산-가거	(주)남해고속	핑크돌핀	흑산도, 태도, 가거도
	목포-외달	(유)신진 해운	슬로아일랜드	달리도, 장좌도, 울도, 외달도

자료: 해양수산부

□ 다만,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면세유 정책은 경유 기반 면세유 사용량이 많아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므로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ETS, Environmental Harmful Subsidy)으로 분류되어 장기적으로 면세유 지원 정책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World Bank(2023)는 농·어업 분야에 지원되는 환경 유해 보조금은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환경 친화적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최소 2배 이상임을 지적하며, 비효율적이고 비환경적인 재정 운영임을 지적한 바 있음.

따라서,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은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자원배

분에 영향을 미쳐 경제의 생산 및 소비 구조를 변화시키며,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임.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30년 말로 5년 연장할 경우, 세수효과는 2026년 567억원 등 2026~2031년 6년간 총 3,339억원(연평균 556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연안여객선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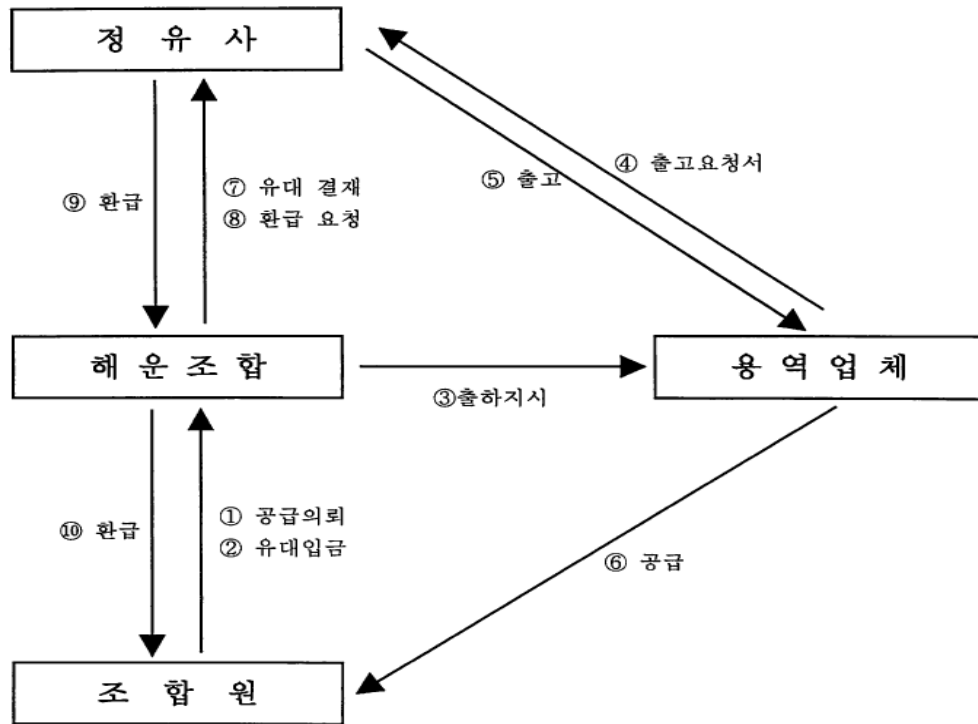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교통·에너지·환경세		-318	-354	-361	-368	-375	-31	-1,806	-301
개별소비세		-6	-6	-6	-6	-6	0	-30	-5
교육세		-49	-54	-55	-56	-57	-5	-275	-46
자동차세(지방세)		-83	-92	-94	-96	-97	-8	-470	-78
부가 가치 세	국세(74.7%)	-83	-112	-113	-114	-115	-29	-566	-94
	지방소비세 (25.3%)	-28	-38	-38	-39	-39	-10	-192	-32
전 체		-567	-655	-666	-678	-690	-83	-3,339	-55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47

〈 면세석유류 공급 흐름도 〉



- ① 조합원 공급의뢰 및 공급확정
- ② 유대결제(환급세액 포함/ 부가세미포함)
- 조합->선사 계산서 발행
- ③ 용역업체에 출하지시
- 조합 출하요청서 발행
- ④ 정유사에 출하요청서 제시
- ⑤ 정유사 출고
- ⑥ 조합원 공급의뢰 선박에 공급
- ⑦ 조합 구입 유대 결제
- 정유사->조합 계산서 발행
- ⑧ 조합->정유사에 세액 환급 신청
- ⑨ 정유사->조합에 세액 환급
- 정유사->조합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
- ⑩ 조합->선사에 세액 환급
- 조합->선사에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

4.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이병진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제111조의5제1항) ○ 감면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경유 ○ 감면내용 -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리터당 56원 감면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탄력세율)에 따라 경유 375원/ℓ × 0.15 = 56원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7년 12월 31일(서영교의원안) - 2028년 12월 31일(이병진의원안, 정부안) - 2030년 12월 31일(윤준병의원안) ☐ 부 칙 ○ 시행일 -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 2026년 1월 1일(이병진·서영교의원안, 정부안)

*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6), 이병진의원안 2025. 6. 27. 발의(의안번호 11114), 서영교의원안 2025. 9. 5. 발의(의안번호 12732),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 예정인 연안화물선박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연안화물선박”이란 「해운법」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²¹⁾에 사

용되는 선박으로 정해진 항로 없이 화주의 의뢰를 받아 국내항에서 국내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함.

- 동 특례제도는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경유선박과 중유에서 경유로 유종을 전환한 연안화물선박의 유류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의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해주기 위한 것으로, 2020년 12월 세법 개정을 통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12월 일몰될 예정임.

이는 경유와 중유가 연소 시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을 배출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이 제한되었기 때문으로, 2020년 이전 기준에 따르면 경유는 황 함유량이 1% 이하여야 하고, 중유는 2~3.5% 이하여야 했음.

[선박유에 대한 황 함유량 규제 강화 내역]

선박연료유		2020년 1월 1일 이전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유		1.0%	0.5%
중유	A중유	2.0%	
	B중유	3.0%	
	C중유	3.5%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1.0%	0.1%

자료: 기획재정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 1월부터 선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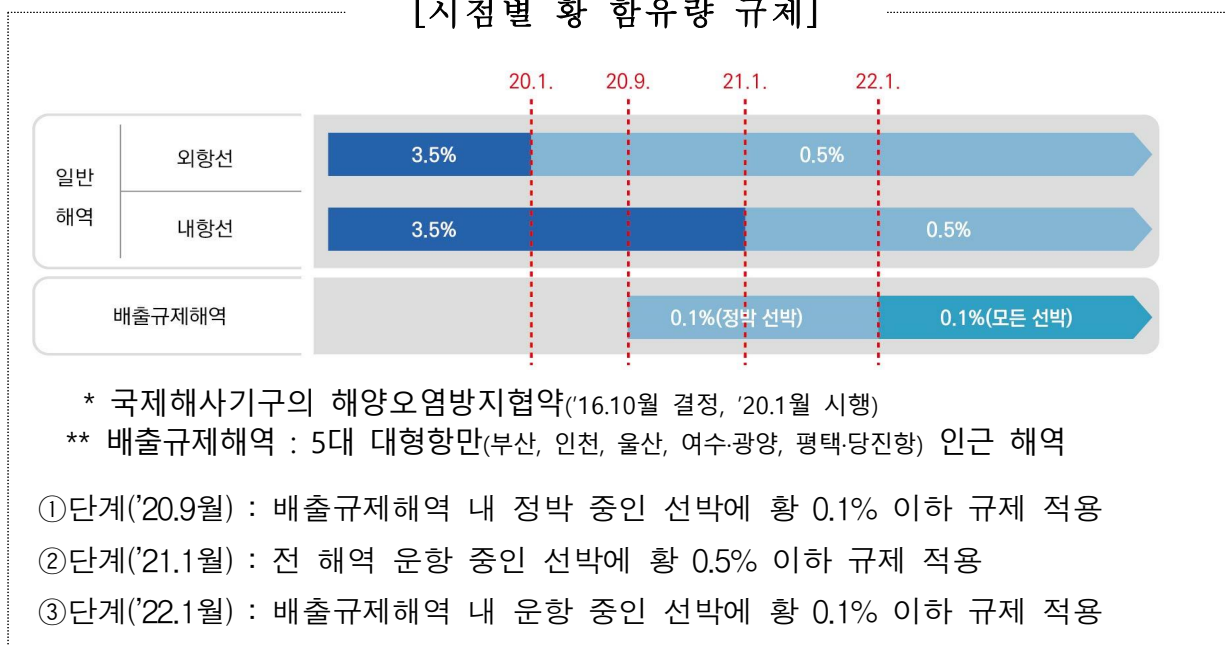
21) 「해운법」

제23조(사업의 종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3.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 제1호와 제2호 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0.5%로 강화하기로 결정함²²⁾에 따라 정부는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경유와 중유 모두 0.5%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²³⁾하였으며, 특히 배출규제해역을 주로 항해하는 연안화물선은 황 함유량 0.1%의 연료유 사용 의무가 부과됨.

[시점별 황 함유량 규제]



자료: 기획재정부

□ 한편,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공급량을 살펴보면 2022년 4만 7,471kl, 2023년 5만 1,017kl, 2024

22) 국제해사기구의 해양오염방지협약(2016년 10월 결정, 2020년 1월 시행)

2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배출규제해역: 0.1퍼센트(무게 퍼센트)

2. 그 밖의 해역

가. 경유: 0.5퍼센트(무게 퍼센트).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0.05퍼센트(무게 퍼센트)

나. 중유: 0.5퍼센트(무게 퍼센트)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국제항해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

년 5만 2,573kl로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해운조합 세액감면 대상 경유 공급 현황]

(단위 : kl)

구분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공급량	47,741	51,074	52,573	5.2%

자료: 한국해운조합

또한, 연안화물선박용 경유에 대한 조세지출 금액은 2023년 32억 원, 2024년 33억 원이고, 2025년에는 33억 원, 2026년에는 34억 원으로 전망되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감면 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연안화물선박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의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세 목	2022	2023	2024	2025(전망)	2026(전망)
교통·에너지·환경세	26	28	29	29	30
교육세	4	4	4	4	4
소 계	30	32	33	33	34

주: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가 교육세로 부과됨.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연안화물선박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선박유의 황 함유량에 대한 국제환경규제 및 탄소중립정책 이행을 위해 유류세 감면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연안화물선 1,955척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은 753척(38.5%)로 아직 경유 미전환 선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므로 동 감면특례의 연장을 통해 경유로의 적극적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4년 내항화물선사는 30,512kl를 경유로 전환하여 대기오염물질 2,173톤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나 연료유 전환 특례를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음.

[연료유 전환으로 인한 대기환경개선 효과]

구분	사용량(ℓ)	대기오염물질(kg)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탄산가스	합계
중유	30,512,600	2,029,048	244,096	26	2,273,170
경유		25,935	73,228	23	99,186
감축량	-	2,003,113	170,868	3	2,173,984

주: 환경부 “대기오염물질발생량계산방법”에 따라 계산

자료: 한국해운조합

둘째, 도서지역에 생필품을 수송하는 필수 교통수단인 연안화물선박은 선박연료유로 경유와 중유를 사용하는데 중유 가격이 경유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중유 사용량이 많았으나, 규제 강화에 따라 선주는 황 함유량이 적은 경유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경유와 중유의 가격 차이로 인한 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되므로 정책적 지원 차원에서 감면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중유와 경유 정유사 평균 판매가격 비교]

(단위: 원/ℓ)

구 분	'21년	'22년	'23년	'24.10월	'24.11월	'24.12월	'25.1월
경유(A)	1,205.5	1,606.5	1,374.5	1,244.1	1,317.3	1,355.8	1,371.8
중유(B)	688.7	1,006.5	886.3	902.3	934.9	943.1	916.8
차이(A-B)	516.8	600.0	488.2	341.8	382.4	412.7	455.0

주: 경유는 선박용 경유, 중유는 C중유

자료: 한국석유공사, 국내 석유제품 월간 가격 동향(2025. 1.)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면세유 정책은 경유 기반 면세유 사용량이 많아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므로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ETS, Environmental Harmful Subsidy)으로 분류되어 장기적으로 면세유 지원 정책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World Bank(2023)는 농·어업 분야에 지원되는 환경 유해 보조금은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환경 친화적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최소 2배 이상임을 지적하며, 비효율적이고 비환경적인 재정 운영임을 지적한 바 있음.

따라서,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은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쳐 경제의 생산 및 소비 구조를 변화시키며,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임.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2026년 47억원 등 2026~2030년까지 5년간 총 259억원(연평균 5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33	-34	-36	-38	-40	-181	-36
교육세	-10	-10	-11	-11	-12	-54	-11
부가가치세	-4	-4	-5	-5	-5	-24	-5
합계	-47	-49	-52	-54	-57	-259	-5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47